

화재보험 요율의 적용 방법

윤 동 혁
(본협회 업무부 차장)

〈*전호에 이어 계속〉

4. 특수건물을 중심으로 한 각 물건별 보험요율적용 실례.

가. 주택물건(물건별 구분은 화재보험요율서 참조)

예1) 기본요율만 있고 할증·할인율이 없는 경우.

〈보기〉
소재지: 서울 은평구 대조동 50번지
소유자: 홍길동
건물구조: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
5층(주택)
보험가입금액: ₩ 20,000,000

※ 화재보험요율서(이하 “요율서”라 칭한다)에서 물건구분과 등지구분 및 건물급수에 의하여 기본요율을 찾아야 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적용요건 { 물건: 주택물건
 등지: 2등지
 건물급수: 3급
 기본요율: 0.053%(2등지 3급)

〈계산방법〉

• 화재보험료

$$₩ 20,000,000 \times 0.053\% = ₩ 10,600 \dots\dots\dots ①$$

보험가입금액) (기본요율) (연간화재보험료)

★ 특수건물인 경우 주택물건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% 할인율이 적용되므로,

$$₩ 10,600 \times 30\% = ₩ 3,180 \dots\dots\dots ②$$

(할인보험료)

①-②

$$₩ 10,600 - ₩ 3,180 = ₩ 7,420 \dots\dots\dots ③$$

(연간화재보험료) (할인보험료) (연간화재보험료)

• 신체보험료: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보험료의 10%(요율서 P111 참조)

$$₩ 7,420 \times 10\% = ₩ 742 \dots\dots\dots ④$$

• 총보험료

③+④

$$₩ 7,420 + ₩ 742 = ₩ 8,162$$

(화재보험료) (신체보험료) (총납입보험료)

주1) 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특수건물은 각 업종별로 다음의 할인율이 적용된다.

물건별	업종별	할인율
주택건물	전체	적용요율의 30%
일반건물	호텔	적용요율의 10%
	학교·시장	적용요율의 15%
	공연장	적용요율이 20%
	국유건물·4층이상 건물·촬영소(방송시설장 포함)	적용요율의 25%
	옥내판매장·사설강습소·병원	적용요율의 30%
공장물건	전체	적용요율의 25%

주2) 특수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상은 상해정도에 따라 최고 400만원, 사망시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된다.

예2) 기본요율에 할증률만 있는 경우.

〈보기〉
 소재지: 광주시 북구 중흥동 20번지
 소유자: 홍길동
 건물구조: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5층 아파트
 보험가입금액: ₩50,000,000

적용요건 { 물건: 주택물건
 등지: 3등지
 건물급수: 1급
 기본요율: 0.024%(3등지 1급)
 할증률: (층수할증) 기본요율의 2%

〈계산방법〉

• 적용요율 산출

$$0.024\% + 0.00048\% = 0.02448\%$$

(기본요율) (층수할증률) (적용요율)

• 화재보험료

$$₩50,000,000 \times 0.02448\% = ₩12,240 \dots\dots ①$$

★ 특수건물할인: 30%

$$₩12,240 \times 30\% = ₩3,672 \dots\dots ②$$

(할인보험료)

〈표 1〉 고층건물할증률표

높이 미터(m)	이		할증률
	층		
35층과 - 52까지	11이상 - 15이하		기본요율의 2%
52층과 - 69까지	16이상 - 20이하		기본요율의 4%
69층과 - 86까지	21이상 - 25이하		기본요율의 8%
86층과 - 103까지	26이상 - 30이하		기본요율의 12%
103층과 - 120까지	31이상 - 35이하		기본요율의 16%
120층과 - 137까지	36이상 - 40이하		기본요율의 20%
137층과	41이상		기본요율의 24%

〔적용상의 유의사항〕

- ① 높이에 있어서 미터(m)와 층수가 상치될 경우에는 미터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설치된 기계설비(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냉·난방기 등)에 대하여도 이 할증을 부가한다.

①-②

$$₩12,240 - ₩3,672 = ₩8,568 \dots\dots ③$$

(연간화재보험료)

• 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0%

$$₩8,568 \times 10\% = ₩857 \dots\dots ④$$

• 총보험료

③+④

$$₩8,568 + ₩857 = ₩9,425$$

(화재보험료) (신체보험료) (총납입보험료)

주3) 고층건물 할증률표는 표 1 과 같다. (요율서 P44 참조)

예3) 기본요율에 할인율만 있는 경우.

〈보기〉
 소재지: 서울 종로구 부암동 18번지
 소유자: 홍길동
 건물구조: 목조 와즙 1층건(주택)(건물주위의 공지거리가 15m일때)
 보험가입금액: ₩60,000,000

적용요건 { 물건: 주택물건
 등지: 1등지
 건물급수: 4급
 기본요율: 0.067% (1등지 1급)
 할인율(공지할인): 기본요율의 20%

〈계산방법〉

• 화재보험료

$$₩60,000,000 \times 0.067\% = ₩40,200 \dots\dots ①$$

★ 공지할인율 적용

$$₩40,200 \times 20\% = ₩8,040 \dots\dots ②$$

(공지할인보험료)

$$① - ② = ₩32,160 \dots\dots ③$$

★ 특수건물 할인율 적용: 30%

$$₩32,160 \times 30\% = ₩9,648$$

(특수건물할인보험료)

$$₩32,160 - ₩9,648 = ₩22,512 \dots\dots ④$$

(연간화재보험료)

• 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0%

$$₩22,512 \times 10\% = ₩2,251 \dots\dots ⑤$$

• 총보험료

④+⑤

$$₩22,512 + ₩2,251 = ₩24,763$$

(화재보험료) (신체보험료) (총납입보험료)